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단풍철 관광 전세버스 및 터미널 방역·안전 관리 철저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10.14)에서 논의된 「단풍철 방역 관리방안」 관련입니다.
2. 코로나 확산세가 다소 안정되면서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1단계로 하향되었으나, 본격적인 가을 단풍철을 맞아 산행 등 관광객의 단체 이동이 예상되어, 정부는 단풍철 방역관리 기간('20.10.17.~11.15.)을 운영하여 방역 현장을 집중 관리할 계획입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지자체는 관할 전세버스 운송사업자 및 터미널 사업자가 방역·안전 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필요 시 개선명령(여객법) 또는 예방조치(감염법)를 통해 적극 관리·감독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업자단체는 운수사업자가 관련 수칙을 철저히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수단 및 교통시설 방역 수칙 >

- 종사자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즉시 자가격리 조치 후 대체인력 투입·운영
- 차량은 최소 2시간 마다 한번씩 휴게소 등에 정차하여 휴식을 취하고, 이때 출입문을 완전히 열어 차량의 환기를 최소 10분 이상 실시할 것
- 출발 전 종사자는 마스크 및 안전띠 착용 등 방역·안전사항을 반드시 육성안내 및 확인
- 차량 및 터미널 내 손소독제 비치, 차량 내 마스크 소량 비치(유사시 대비)
- 차량 운행 전·후 방역 실시(하차장 또는 주차장), 터미널·기사휴게실·숙소 등 공용 공간 1일 1회 이상 방역 실시

4. 아울러, 지자체는 관광 목적의 전세버스 방역·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주요 관광지 등 이용자 버스 내 음주가무, 운행 중 좌석 이탈, 마스크 미착용, 운행 전·후 방역, 단기 탑승객 명단 관리 등 이행 실태를 점검반을 편성·점검(~'20.11.15)하여 11.20.(금)까지 점검 및 조치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히, 이용자의 버스 내 음주 가무, 운행 중 좌석 이탈행위 등 적발 시 엄중 처벌(여객법 제85조)

붙임: 점검 결과(양식) 1부. 끝.

국토교통부장관

수신자 강원도지사(교통과장), 경기도지사(버스정책과장), 경상남도지사(교통정책과장), 광주광역시장(대중교통과장), 대구광역시장(버스운영과장), 대전광역시장(운송주차과장), 서울특별시장(버스정책과장), 세종특별자치시장(교통과장), 울산광역시장(버스타็กซี่과장), 인천광역시장(택시화물과장), 전라남도지사(도로교통과장), 전라북도지사(도로교통과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대중교통과장), 충청남도지사(교통정책과장), 충청북도지사(교통정책과장), 경상북도지사(교통정책과장), 부산광역시장(버스운영과장), 광주광역시장(교통정책과장), 서울특별시장(주차계획과장), 인천광역시장(교통정책과장),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장, 전국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자협회

주무관	최아진	시설사무관	김동규	버스정책과장	출장	종합교통정책	전결 2020. 10. 15.
협조자						관	어명소
시행	버스정책과-1607	(2020. 10. 15.)		접수			
우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어진동)				/	http://www.molit.go.kr
전화번호	044-201-3829	팩스번호	044-201-5582	/	1234nn@molit.go.kr	/	비공개(5)

일자리가 성장이고 복지입니다.